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권보호 관련 기본원칙 신설 및 국가 책무 추가〉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043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인권보호 관련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전종덕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7. 20.

다. 회 부 일 : 2026. 7.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은 고용, 금융, 행정,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며 국민의 기본적 삶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의 도입·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의 참여 보장이 미흡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 시 효과적 권리구제 수단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제사회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권 보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존중, 차별 금지, 감독체계 구축 등을 권고한 바 있음.

현행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

큰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Ⅲ. 검토의견

1. 인권보호 관련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대하여 인권보호와 차별금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신설하고(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국가의 책무로 인공지능의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략) <u><신설></u>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활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선택·판단 및 결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설></u>	<u>④ 누구든지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함에 있어 그 영향이 미치는 사람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장애·연령·출신지역·신체조건·피부색·성적지향·사회적 신분 등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편향되거나 차별적</u>

현행	개정안
<신설> ③ ~ ⑤ (생략)	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있어 인권적 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하여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한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⑥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인공지능의 판단이나 결정이 개인의 선택과 권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2년 5월에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 또한,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2024년 5월에 인공지능이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관한 유럽평의회 프레임워크 협약」¹⁾을 채택한 바 있음.

- 한편, 현행법은 제33조제1항에서 기본원칙을 규정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제33조 및 제35조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제34조에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등²⁾ 인공지능이 국민의 삶과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1)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방안의 수립·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

5.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

을 고려하여 일정한 관리·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현행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영역을 나열³⁾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가 관련 책무를 이행하도록 규정에 명시한 바는 없음.

○ 이에 개정안은 기본원칙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부합하는 개발·활용과 개인의 의사에 대한 자율 제한 금지를 추가하고,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다양성·대표성 반영 노력 의무 및 차별적 결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운영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활용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발생 금지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는 한편,

국가에게 인권적 가치 우선 고려 및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감독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성을 선언적·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기본원칙과 책무 규정
에 인권보호 관련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동일한 내용을 기준으로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보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제2장)>

제1절 인간의 존엄성 존중

16. 인공지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선택과 판단 및 결정을 강요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4절 차별 금지

32.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할 때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신체조건, 피부색, 성적 지향, 사회적 신분 등 개인과 집단의 특성에 따라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5절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

38. 국가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인권적 가치가 우선시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3조제5항 전단은 국가에게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있어 인권적 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이 주체인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가치나 요인보다 인권적 가치가 우선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국가가 민간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인권적 가치가 다른 가치에 밀려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인권 보호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위하여 인권적 가치가 고려되도록 장려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는 민간 주체는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기술적 효율성, 경제적 효과성, 이용자의 편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인권적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우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면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과 관련하여 인권적 가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명시하되 민간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인권적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우선 고려되도록 할 의무는 부과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임.
- 둘째, 안 제3조제5항 후단은 국가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차별을 관리·감독하도록 책무를 부과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직

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총칙에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문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률의 총칙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의 책무는 해당 법률이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포괄적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제도 마련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정책적·제도적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런데, 개정안은 국가에 대하여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 및 감독’을 하도록 직접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⁴⁾하고 있어, 국가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책무 규정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국가의 책무로 사전적·사후적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는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방안을 마련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안 제3조제5항과 같이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한다면 이를 총칙의 책무규정이 아닌 실체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고, 주무부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참고로, 현행법 제28조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활용의 안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인공지능사업자 등이 설치하는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함.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 수용

- 인공지능 개발·활용 시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공지능 개발·활용 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성별·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본원칙에 규정하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3조제5항과 같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에 대해 사전·사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는 규정하는 경우 관리·감독의 대상이나 방법 등의 대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행이 어렵고, 현행법에서도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제도(제32조), 고영향 인공지능 규제 제도(제33조부터 제35조) 등을 통해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을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도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기본법의 일반원칙에 인공지능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230